

의안번호	2207030
의 퇴 인	전진숙 의원
회 답 일	2025. 1. 9.
추 계 번호	24C62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출산크레딧의 지원 기간을 확대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46년부터 2055년까지 8,647억원(연평균 865억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46~2055년

(단위: 억원)

	2046	2047	2048	2049	2050	합 계	연평균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9조)	10	36	128	351	589	8,647	865
	2051	2052	2053	2054	2055		
	831	1,187	1,536	1,837	2,143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46년부터 2055년까지 10년으로 설정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2. 202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무제한)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9조의3(노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의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최대 120개월 까지 추가로 산입 (제2항)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4(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최대 120개월 까지 추가로 산입 1.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 간호·간병등을 제공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제2항)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안 제19조의3(노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9조의4(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19조의3) 현 시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가족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어려움
- (안 제19조의4) 현 시점에서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간호·간병 제공 가족 및 보호수당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어려움

□ 따라서, 본 추계서는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19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만 추계

- 본 비용추계의 대상은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
 - － 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¹⁾을 활용하여 산출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10년으로 설정
 - － (출산크레딧) 개정안 부칙은 법률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시점인 2026년에 다섯째 이상을 출산한 사람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시점(60세)에 도달하는 2046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2026년에 다섯째 이상을 출산한 사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순차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2026년 다섯째 이상을 출산한 모(母, 출산 시 평균 연령 37세)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60세)가 되는 첫해는 2049년이며, 평균 3세 연상으로 가정된 배우자(父)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첫해는 2046년이므로 2046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1)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시점

구 분		2026년 출산 순위				
		다섯째 이상	넷째	셋째	둘째	첫째
출산 연령(세)	모(母)	37	36	35	34	32
	부(父)	40	39	38	37	35
60세 도달 시점 (년)	모(母)	2049	2050	2051	2052	2054
	부(父)	2046	2047	2048	2049	2051

- 추계기간이 장기이고 연금급여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되므로 2025년 기준 불변가격²⁾으로 제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출산 연령)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제시된 출산 순위별 모(母)의 평균 연령을 적용
 - 추계기간에는 2023년 기준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연령이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³⁾
 - 2023년 출산 순위별 모(母)의 평균 연령: 첫째 32세, 둘째 34세, 셋째 35세, 넷째 36세, 다섯째 이상 37세
- (출산순위별 자녀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⁴⁾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제시된 2023년 기준 출생아의 출산순위별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2023년 출산순위별 출생아 비율: 첫째 60.2%, 둘째 32.3%, 셋째 6.2%, 넷째 1.0%, 다섯째 이상 0.3%
- (출산크레딧 대상자) 부모인 남성과 여성 수급자가 출산크레딧을 각각 50%씩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⁵⁾, 남성 수급자는 여성 수급자보다 연령이 3세 높은 것으로 가정⁶⁾

2) 불변가격은 GDP디플레이터(2024.9.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잠정전망치)로 각 연도 발생금액을 나누어 산출

3) 최근 출산 순위별 모(母)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해당 연령의 변동 추이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연령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4) 2023년 12월 1일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5) 「국민연금법」

제19조 <전략>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략>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에 연령별 가입률, 종별이동률,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연금수급권자 수를 산출
 - 연금수급권자 중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률을 적용하여 해당자 수를 산출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노령연금액 산정에 관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노령연금액을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연령별,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여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출산크레딧 적용자는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 산출 시 가입기간 산입에 따른 추가연금액이 산정됨
-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은 65세이나,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5세 전부터 수급이 가능하므로, 60세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46년부터 2055년까지 8,647억원(연평균 865억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46~2055년

(단위: 억원)

	2046	2047	2048	2049	2050	합 계	연평균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9조)	10	36	128	351	589	8,647	865
	2051	2052	2053	2054	2055		
	831	1,187	1,536	1,837	2,143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46년부터 2055년까지 10년으로 설정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2. 202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통계청의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5세, 재혼연령 차이는 4.5세이므로 배우자의 평균 연령 차이를 그 평균값인 3세로 적용함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